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2.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도로명주소법 시행(2011.8.4.)에 따른 보건소, 사업소, 출장소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권역별 도서관을 총괄하는 센터개념의 시립도서관 명칭을 변경코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소 명칭변경(안 제19조)
 - 구미시립도서관 → 구미시립중앙도서관
- 보건소, 사업소, 출장소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 표기
(안 별표1, 별표2, 별표3)
- 관계법령의 정비(안 제13조, 제20조, 제23조)

3. 관련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1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다. 「도로명주소법」 제18조의2 및 제19조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문리 509번지”를 “김선로 963”으로 한다.
제19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미시립중앙도서관

제19조제5호가목 중 “운영”을 “관리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도서관자료의 선정, 수집, 교환, 분류, 등록, 열람, 대출, 반납

제19조제5호바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에 차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작은도서관 운영

카.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제20조제1항 중 “제40조의2 규정에 의하여”를 “제78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의2제1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시립도서관”을 “시립중앙도서관”으로 한다.

②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표의 장소란 중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513번지”를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309”로 한다.

③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구미시 원평동 460-1번지”를 “구미시 산책로 51”로 한다.

[별표1]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원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 구미보건소 관할 >

구분	명칭	위치	관할구역
보건소	구미보건소	구미시 선산대로 111(지산동)	구미시일원 (제외 읍·면지역)
보건지소	인동보건지소	구미시 이계북로 149(진평동)	인동·진마·양포동일원

< 선산보건소 관할 >

구분	명칭	위치	관할구역
보건소	선산보건소	구미시 선산읍 선주로 121	구미시 읍·면지역 일원
보건지소	고아읍보건지소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980	고아읍 일원
	무을면보건지소	구미시 무을면 문화마을길 32	무을면 일원
	옥성면보건지소	구미시 옥성면 주아령로 411	옥성면 일원
	도개면보건지소	구미시 도개면 궁기4길 15	도개면 일원
	해평면보건지소	구미시 해평면 송선로 523-14	해평면 일원
	산동면보건지소	구미시 산동면 강동로 999-6	산동면 일원
	장천면보건지소	구미시 장천면 강동로 184	장천면 일원
보건진료소	서부보건진료소	구미시 선산읍 배다리2길 16-2	습례1·2리, 봉남1·2리 소재리
	연악보건진료소	구미시 무을면 상송길 11-18	오가1·2·3리, 상송리 안곡1·2리
	덕촌보건진료소	구미시 옥성면 덕촌 3길 6	신촌리, 태봉1·2리 대원1·2리, 덕촌1·2리
	구봉보건진료소	구미시 옥성면 구봉1길 5	구봉1·2리, 옥관1·2리
	가산보건진료소	구미시 도개면 가산 2길 4	가산1·2리, 동산리 용산1·2리
	다곡보건진료소	구미시 도개면 도개다곡길 471	다곡1·2리, 신림리 도개1·2리
	낙산보건진료소	구미시 해평면 낙산1길 51-3	낙산1·2·3리, 일선리
	대방보건진료소	구미시 고아읍 포아로 636-5	신촌리, 황산리, 황산리 외예리, 내예리
	구운보건진료소	구미시 고아읍 송평로 141	괴평1·2리, 송림리 다식리
	송백보건진료소	구미시 산동면 송백로 860	백현1·2리, 송산리
	임봉보건진료소	구미시 산동면 임봉길 47-1	봉산1·2리, 임천리
	금산보건진료소	구미시 장천면 금산3길 10-3	금산리, 오로1·2리

[별 표2]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7조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구미시평생교육원	구미시 산호대로 243 (공단동)
구미시상하수도사업소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309
구미시문화예술회관	구미시 송정대로 89 (송정동)
구미시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구미시 금오산상가길 12 (남통동)
구미시립중앙도서관	구미시 경은로 85 (형곡동)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309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309
구미시노인종합복지회관	구미시 산책로 51 (원평동)

[별 표3]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0조관련)

출장소명	위 치	관 할 구 역
구미시선산출장소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	선산읍,고아읍,무을면,옥성면, 도개면,해평면,산동면,장천면 (단, 농정, 유통축산, 산림경영 업무는 관할구역을 시전역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설치) ①영 제1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 농민 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 기 위하여 시에 구미시농업기술 센터(이하 “센터” 라한다)를 설치한다.	제13조(설치) ①영 제1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 ----- ----- -----.
②센터의 위치는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509번지에 둔다.	②----- - 김선로 963-----.
제19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 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 와 같다.	제19조(소관사무)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구미시립도서관	5. 구미시립중앙도서관
가.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	가.----- 관리 및 운영- -----
나. 도서관자료의 선정,수집, 교환,분류,등록,열람,대 출,반납	나. 도서관자료의 선정, 수집, 교환, 분류, 등록, 열람, 대출, 반납
다. ~ 마. (생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바. 시청각실 및 멀티미디어실 운영	<삭 제>
사. 선산분관 운영	<삭 제>
아. 인동분관 관리 및 운영	<삭 제>
자. (생략)	자.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6. ~ 8. (생 략) 제20조(설치) ①법 제1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출장소를 둔다. ② (생 략) 제23조(설치) ①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을 둔다. ② (생 략)	차. 작은도서관 운영 카.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6. ~ 8. (현행과 같음) 제20조(설치) ①----- -----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 -----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설치) ①----- ----- 제4조의2제1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 -----. ② (현행과 같음)
--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도로명주소법」

제18조의2(주소의 일괄변경) ① 시장등은 「부동산등기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점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문서상의 주소의 변경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도로명주소 등의 효력) ① 제18조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는 각종 공부상(公簿上)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부여된 지번을 주소(이하 "지번방식의 주소"라 한다)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한 경우 해당 공부에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다시 사용할 수 없다.